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47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최보윤・박성민・김선교

김 건・서천호・최수진

임이자 • 박정훈 • 이종배

김소희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고,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저항 강도와 의식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이중 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 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심리, 청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질 편차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중재가 필수적이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 인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놀이재활·미술재활·음악재활 등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에 대해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 중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20 및 제72조의4 신설등).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 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알게 된 때"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알게 된 경우"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 죄 사건을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도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 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59조의13제2항 중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을 "피해장애아동"으로 한다.

제5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0(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 애아동 쉼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 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장애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

사"로 한다.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발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학 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 로 본다.
 - 1. 1급 발달재활사: 2급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2급 발달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③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의 구체적인 분류 및 기준,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⑤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의 발달재활 관련학과와 발달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기사등"이라 한다)"를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로, "실시하되,"를 "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시험은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6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7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제77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제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0조의4(한국발달재활사협회) ① 발달재활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발달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발달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자격과 관련된 교육, 기준 개발, 자격 등록, 직무윤리 교육 등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59조의4, 제59조의7, 제59조의10, 제59조의13 및 제59조의2 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발달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7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달재활 관련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발달재활사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생 략) 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을 지 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 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 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 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 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 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알게 된 경우 또는 장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2. (생 략) <신 설>

④ ~ ⑧ (생 략)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⑦ (생 략)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죄가 의심되는 경우-----. 1. ~ 22.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 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사기관 에,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장 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에도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 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 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 • 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 8 <u>제7항</u>의 신분조회 등 필요 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 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 1. ~ 6. (생략)
-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생 략)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는 <u>장애인학대로 인하여</u>
 피해를 입은 <u>장애아동(이하</u>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
 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
 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생 략) <u><신 설></u>

<u> </u>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u>이 경우 장</u>
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해장애아동
<u>H</u> on 3 on or 5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0(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 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 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 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 등) ① -----인재활상담사, 발달재활사----

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 에 노력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4(발달재활사 자격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발달재활 관련 전문 영역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발 달재활사"라 한다)에게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발달재활사의 국가시험 응 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 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서 발달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1급 발달재활사: 2급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달재활 분야 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 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발달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기관 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2급 발달재활사: 「고등교육 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③ 발달재활 관련 전문영역의 구체적인 분류 및 기준, 교육과 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분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 · 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의 지 · 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 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실시하되, 실시시기 · 실시방 법 ·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 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 다.

⑤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자격 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 리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 기관의 범위, 대학원 · 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학과와 발달재 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 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발달재활 사(이하"의지·보조기 기사등" 이라 한다)-------실시하되, 발달재활사 국가 시험은 제72조의4제2항에 따른 발달재활 자격증 종류 및 전문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② (생략)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한다.

1. ~ 1의3. (생 략) <u><신 설></u>

2. · 3. (생략)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1. ~ 1의3. (생 략) <u><신</u> 설>

2.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자격취소)
<u>.</u>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72조의4제5항을 위반하
여 타인에게 발달재활사 자격
증을 대여하였을 때
2.・3. (현행과 같음)
제77조(자격정지)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발달재활사의 업무를 하
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현행과 같음)
제80조의4(한국발달재활사협회)
① 박닥재화사는 자애이재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발달재활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발달

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 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국발달재활 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자격과 관련된 교육, 기준 개 발, 자격 등록, 직무윤리 교육 등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